

Deloitte.

세무관세 뉴스

2024 년 5월



주목할 만한 사항

법인소득세 ("CIT")

- 기업에 의해 동시에 수행한 독립 투자 프로젝트들 간 손실 상쇄 및 이월
- 투자허가서상 공장면적을 변경할 경우 CIT 인센티브 적용안내
- 건설 단계에서 토지 임대료 할당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norm") 을 초과하는 소모품에 대한 비용 및 매입 VAT의 공제가능성 결정
- 원자재 및 완제품 폐기비용 손금산입 불가

외국인계약사제 ("FCWT")

-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운송 서비스, 국제 물류 및 국제 운송에 대한 FCWT
-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월별 FCWT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간접세 ("VAT")

- 수출가공업체 ("EPE")가 비관세지역 외에서 창고를 임대하는 경우 VAT 10% 적용

개인소득세 ("PIT")

- 기존주주에 대한 주식배당 및 상여주식에 대한 PIT 관리 강화
- 자산을 임대하는 개인의 PIT 및 VAT 과세소득
- 비거주자의 경우 주택수당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무역 및 관세

- "간단한 처리 및 가공" 과정을 거쳐 재수출된 수입품에 대한 세금환급
- 수입 관세 면제 후 사용 목적이 변경된 물품에 대한 VAT
- 원산지증명서와 세관신고서의 HS 코드가 다른 경우에 대한 지침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기업에 의해 동시에 수행한 독립 투자 프로젝트들 간 손실 상쇄 및 이월

2023년 12월 19일, 세무총국은 제5781/TCT-CS호 공문을 발행하여, 현행 법인세 규정에 손실을 입는 인센티브 프로젝트와 소득이 있는 기타 인센티브 프로젝트 간에 상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정책과 수수료 및 과금감독청 (Department of the Tax policies, fees and charges Supervisory Authority – “DTSA”) 및 재무부의 법무청과 협의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 재무부의 법무청의 관점에 따르면 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손실이 기타 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소득과 상계될 수 없고,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아닌 프로젝트의 과세 소득 또는 기타 사업 활동의 소득과만 상계될 수 있다.
- DTSA는 손실상계 및 이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수행되는 사업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기 지침이 발표된 후 납세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공문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동일 업종에서 서로 다른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03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독립적인 투자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총국은 2024년 5월 2일 제 1792/TCT-CS호 공문으로 답변하고 현행 법인세 법률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독립적인 투자 프로젝트들간의 손실 상계 및 이월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세무총국은 권한에 따라 답변하기 위해 재무부에 올릴 보고서를 종합하기 위해 DTSA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세무총국의 19일 12월 2023년 제 5781/TCT-CS 호 OI)

(세무총국의 2024년 5월 2일 제 1792/TCT-CS 호 OI)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투자허가서상 공장면적을 변경할 경우 CIT 인센티브 적용안내

회사가 위치로 인해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되고 있으며, 투자허가서상 공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이 투자허가서의 수정이 투자 프로젝트의 인센티브 자격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회사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기존 프로젝트의 남은 기간 동안 법인세 인센티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는,
- 제 78/2014/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18.6조에 명시된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면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Bac Giang 세무국의 2024년 5월 9일 제 3358/CTBGI-TTHT호 OL)

건설 단계에서 토지 임대료 할당

세무총국은 2024년 5월 7일에 제1879/TCT-CS호 공문을 발행하였고 공문의 내용중에 기본건설 단계의 토지 임대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지방 세무국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제공하는 2개의 공문이 언급되었다. 구체적으로:

Long An 세무국의 2023년 11월 2일 제4305/CTLAN-TTHT호 공문에 따르면:

- 회사가 토지의 총 임대기간의 임대료와 인프라 세금을 일시불로 지불한 경우, 토지임대 연도 수에 따라 사업비용에 점진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 하지만 기본건설 단계에 발생한 임대료는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손금산입으로 처리할 수 없다. 회사는 이를 장기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건설이 완료되어 생산 및 사업 운영을 시작한 시에 사업비용에 점진적으로 할당한다. 최대 할당 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Dong Nai 세무국은 2023년 12월 05일 제1351/CTDON-TTHT호 공문을 발행했다. 따라서 회사의 프로젝트가 아직 운영되지 않은 연도에 할당되는 선불 토지 임대료, 인프라 임대료는 제 78/2014/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6조의 제 1 항, 제 2.16 항, 제 2.32 항을 보완된 제 96/2015/TT-BTC호 시행규칙의 제 4조에 의한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으로 처리될 수 있다.

(Long An 세무국의 2023년 11월 2일 제 4305/CTLAN-TTHT호 OL)

(Dong Nai 세무국의 2023년 12월 5일 제 1351/CTDON-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norm") 을 초과하는 소모품에 대한 비용 및 매입 VAT의 공제가능성 결정

세무총국은 지방 세무국에 답변하는 공문에서 표준 norm을 초과하는 재료, 연료, 에너지 및 재화 ("소모품")에 대한 세금처리와 관련하여 관점을 공유한다.

- VAT 관점에서:
 - ✓ Norm을 초과하는 소모품에 대한 매입 VAT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 ✓ 정부에 의해 규정된 norm의 경우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 VAT가 공제되지 않는다.
- CIT 관점에서:
 - ✓ 기업은 생산 및 사업에 사용하는 재료, 연료, 에너지 및 재화에 대한 norm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관리한다.
 - ✓ 정부에 의해 규정된 norm의 경우 따라서 준수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5월 16일 제 2087/TCT-CS 호 OL)

원자재 및 완제품 폐기비용 손금산입 불가

회사는 고객의 주문이나 생산 및 사업 전략을 변경하기 때문에 원자재 및 완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경우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관련비용이 CIT 과세소득 결정 시 공제되지 않는다.

(Vinh Phuc의 세무국의 2024년 5월 6일 제 995/CTVPH-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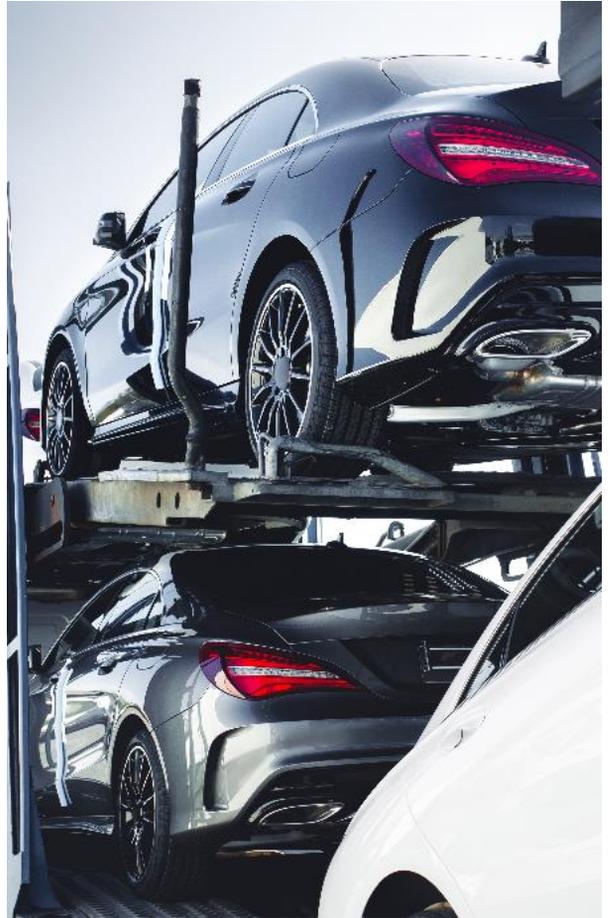


간접세 ("VAT") 지침 문서

수출가공업체 ("EPE")가 비관세지역 외에서 창고를 임대하는 경우 VAT 10% 적용

EPE가 원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임대하는데 창고 임대서비스가 비관세지역 외에서 수행 및 소비되는 경우 제219/2013호/TT-BTC호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VAT 0%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규정에 따라 VAT 10%가 적용된다.

(Long An 세무국의 2024년 5월 9일 제 2231/CTLAN-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기존주주에 대한 주식배당 및 상여주식에 대한 PIT 관리 강화

자본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PIT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지침을 시행할 것을 지역 세무국에 요청한다:

- **납세자를 대신하여 PIT를 신고-납부하는 단체 감독:** 지방에서 대신 납세단체가 아직 세금 신고 & 납부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현지 세무국은 대신 납세단체가 규정에 따라 개인인 기존 주주의 주식 배당금 또는 보너스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PIT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검토하고 독촉하기 위한 세무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세무 감사&조사와 관련:** 세무국은 법규정에 따라 증권회사, 증권예탁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은행, 금융운용사 및 증권발행사의 세금신고 서류에 대한 desk-review 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예 위험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험을 발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현장에서 조사/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세무국은 다음을 감사해야 한다:
 - ✓ (주식배당 또는 상여주식을 받는) 개인을 대신하여 PIT 신고&납부 상황
 - ✓ 개인이 법규정에 따라 동종주식을 양도할 때 자본투자예 의한 소득에 대한 PIT에 대한 신고&납부 상황

(세무총국의 2024년 5월 2일 제 1806/TCT-DNNCN 호 OL)

자산을 임대하는 개인의 PIT 및 VAT 과세소득

제40/2021/TT-BTC호 시행규칙의 부록 I에 따르면 개인이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VAT 5% 및 PIT 5% 과세된다.

개인 임대인과 법인 임차인 간에 맺은 계약에 근거하면 개인 임대인이 규정에 따라 자산임대소득에 대하여 VAT 및 PIT를 납부해야 한다. VAT 및 PIT 과세대상 소득은 세금을 포함한 소득이므로 (과세대상인 경우), 계약서상 임대차가격이 VAT 및 PIT가 포함되지 않은 걸로 명시하면 세무국은 임대인이 받는 소득에서 0.9로 나누는 방식으로 VAT & PIT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임대인 및 임차인중에 어느 당사자가 세금 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는지 민법에 따라 계약서상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4월 3일 제 1368/TCT-DNNCN호 OL)

비거주자의 경우 주택수당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임대료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된 주택 임대료 금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제92/2015/TT-BTC호 시행규칙 제11조 2항의 의한 지침에 따라 베트남에서 발생한 총 과세소득 (월세, 전기, 수도 및 관련 서비스 (있는 경우) 제외)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4월 23일 제 23289/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운송 서비스, 국제 물류 및 국제 운송에 대한 FCWT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운송 서비스, 국제 물류 또는 국제 운송을 통해 베트남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FCWT 과세된 대상이다.

외국인 계약자가 제103/2014/TT-BTC 호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 회사는 제 103/2014/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13조 및 제 12조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국제 운송 서비스의 경우(국제 운임):
 - ✓ VAT: 국제 운임에는 0% 세율이 적용된다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9조 2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과세소득에 대해 3% 세율 적용 (0% 세율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CIT: 과세소득에 대한 2% 세율 적용.
-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국제 물류, 포워딩 서비스의 경우 (국제 운임 제외):
 - ✓ VAT: 과세소득에 대한 5% 세율 적용
 - ✓ CIT: 과세소득에 대한 5% 세율 적용.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국제 운송 및 창고 서비스에 대한 CIT 과세소득은 해운회사 (해운 운송)에게 지급하는 국제 운임을 제외하고 외국인 계약자가 받는 전체 소득이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4월 23일 제23287/CTHN-TTHT호OL)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월별 FCWT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회사가 외국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외국인 계약자와 매월 여러 거래 및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매번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신고하는 대신에 월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월별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0일이다.

회사는 당월에 FCWT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 월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4월 23일 제23287/CTHN-TTHT호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관세 및 무역 지침 문서

“간단한 처리 및 가공” 과정을 거쳐 재수출된 수입품에 대한 세금환급

관세 총국의 지침, 제 107/2016/QH13 호 수출입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수입관세를 납부했으나 수입 물품을 재수출해야 할 경우 해당 수입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수입품이 사용, 가공,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수출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현행규정은 해외로 재수출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환급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가공 및 제조 공정의 사용을 명시하지 않는다.

(관세 총국의 2024년 4월 12일 제1581/TCHQ-TXNK호 OL)

수입 관세 면제 후 사용 목적이 변경된 물품에 대한 VAT

관세 총국의 지침에 따라 수입단계의 VAT과세 가격은 “국경검문소에서 수입 과세가격”에 “수입 관세(있는 경우)”와 “특별소비세(있는 경우)”와 “환경보호세(있는 경우)”를 더한 금액이다.

기업이 “국경검문소에서 수입 과세가격”의 VAT를 납부했는데, 수입 단계에 수입 관세가 면제로 인해 “수입 관세”에 대한 VAT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후 단계에서 수입 물품의 사용 목적 변경으로 인해 “수입 관세”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수입 관세”의 추가 VAT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 총국의 2024년 4월 12일 제1570/TCHQ-TXNK호 OL)

원산지증명서와 세관신고서의 HS 코드가 다른 경우에 대한 지침

원산지증명서(“C/O”)와 수입신고서의 서로 다른 HS 코드와 관련하여 관세총국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 C/O에 기재된 상품명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상품명, HS코드 분석분류 결과 통지, 또는 실제 수입물품과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C/O를 거부하는 절차를 실행한다.
- C/O에 기재된 상품명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상품명, HS코드 분석분류 결과 통지, 또는 실제 수입물품과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관당국은 재무부의 2023년 5월 31일 제 33/2023/TT-BTC 호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세 총국의 2024년 5월 9일 제2011/TCHQ-GSQL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KSG 부대표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